

'97 양계시책

본고는 농림부가 개정한 '97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 중 양계분야만을 발췌·요약한 것이다.

-편지자주-

닭 경쟁력 강화 사업(자율)

-농림부 축산경영과-

1. 목적

- 양계경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여 생산비절감 양계업 경쟁력 제고
-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품질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도모

2. 추진방향

- 가족농 중심의 양계 전업농을 중심 육성
- 기반시설, 축사시설, 자동화 시설, 환경제어시설 및 각종 기계기구 등을 종합지원
- 정부지원이 사육수수 증가와 연결되지 않도록 증축보다는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우선지원

3. 연차별 지원계획(표1)

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- 가. 사업내용
- 사업기간 : 1년
- 지원내용

표 1. 연차별 지원계획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94까지 | '95 | '96 | '97 | '98 | '99-2004 | 합계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사업량 | 개소 508 | 526 | 765 | 300 | 200 | 400 | 2,699 |
| 계 | 68,245 | 79,273 | 109,286 | 109,289 | 98,600 | 528,700 | 990,404 |
| 국 고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국고용자 | 11,320 | - | - | - | - | - | 11,320 |
| 업 기금보조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금융자 | 32,610 | 52,900 | 76,500 | 76,500 | 69,000 | 370,000 | 677,510 |
| 비 자 부 담 | 24,315 | 26,373 | 32,786 | 32,789 | 29,600 | 158,700 | 301,574 |

-기반시설 : 용수개발, 부지정지, 도로개설, 전기인입시설 등

-사육시설 : 축사 신·증·개축, 급이·급수시설, 환경개선 시설(자동환기장치, 열풍기, 온도조절기 등), 각종 축사내부시설, 부화시설(건물, 부화 장비 등)

-유통시설 : 계란집하장 시설(건물, 운반장비), 계란 선별기 시설 등), 계란 저온저장 시설(건물, 냉장시설 등), 계란가공시설

○기계, 기구, 장비 : 트레터, 로다, 소독장비, 부산물처리장비 등

※부지구입 및 가축구입비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별도의 공해방지 시설사업으로 지원

○지원대상

- 닭 사육농가 또는 종계장, 부화장 경영자
- 양계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, 축협, 자생적인 협업

체 등**O 지원규모**

- 농가 : 호당 3~5억원 이내(육계 3억원, 산란계 5억원)

- 법인 : 자기자본의 200% 이내

- 축협 및 공공기관 :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※ 단 종계장, 부화장, 계란집하장 시설 등을 사업규모,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액지원 가능

O 지원조건

- 재원 : 축산발전기금

- 지원조건 : 5년거치 10년균분상환, 연리 5%

- 지원비율 : 융자 70% 이내, 자담 30% 이상

나. '97사업비 (예산안) 내용

표2. '97사업비 (예산안) 내용

| 내 용 | 사업량 | 사 업 비 (백만원)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| | 축산발전기금 | | | 지방비 | 자부담 | |
| | | 소 계 | 융 자 | 보 조 | | | |
| 닭경쟁력 제고사업 | 300호 | 109,289 | 76,500 | 76,500 | - | - | 32,789 |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 : 시장·군수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

○ 시·도 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
○ 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농산과(축산계)

다. 사업시행

○ 추진방식 : 농어민 자율방식

○ 사업계획·수립 및 변경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
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·군에 보고, 시장·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
시·도에 보고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
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
수시로 현지를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자급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.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○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을 감안, 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.

○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지원자금의 회수 또는 취소된 자가 새로이 사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

○ 시·도(시·군·구)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 이상 종합 점검·평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조치

○ 시·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(사업자금집행 관리규정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조치) 기해야 함.

나. 보고

○ 시·도지사는 농림사업 평가실시요령(농림부 혼령 제825호, '95.7.26)에 의거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(대상자 선정 결과(3.10), 사업추진실적 보고(의년 2.10)

- 별지 제1, 2, 3호서식(생략)

5. '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(읍·면), 농촌지도소

나. 대상자선정

(1) 신청자격

<전업농, 종계, 부화업>

○ 양계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
○ 시·도지사에 종계업, 부화업 등록이 되어 있고 생산실적이 있는 종계장, 부화장 경영자

<축협, 법인, 협업체 등>

○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축협조합

○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양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5인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로서 1년이상 사업 실적이 있고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, 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%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, 협업체

(2) 선정 우선순위

<개별농가>

- ① 50천수 미만 사육농가로서 사육수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시설을 대체하여 현대화, 자동화하거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
- ② 10천수 ~ 30천수 규모 사육농가
- ③ 30천수 ~ 50천수 규모 사육농가
- ④ 10천수이하 규모 사육농가
 - * 동일 순위일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
- ① 종계업, 부화업, 닭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
 - 계열사업 참여농가는 계열주체의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
- ② 전업규모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자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
- ③ 농과계 출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자
- ④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자
 - *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함. (조합, 법인, 협업체 포함)
- <조합·법인·협업체>
 - 조합·법인·협업체도 구성농가를 평가하여 상기사육규모별 우선순위 적용
 - 구매, 출하, 방역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응집력이 큰 단체
 - 공해문제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서 양계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
 - 기술 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
 - * 조합, 법인, 협업체 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,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(구성농가의 평균사육수수 기준)를 적용
 - (3) 신청 및 선정절차
 - 사업희망자는 농림사업 실시 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
 - 시·군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~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

계열주체는 지원에 필요한 계열농가 내역을 시·군에 제출 → 시·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

(4) 구비서류 : 농림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다. 기타사항

○ '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비율,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가축계열화사업

-농림부축산경영과-

1. 목적

○ 전문경영 주체중심의 생산, 가공,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

2. 추진방향

- 사전심사 강화 및 준비철저로 계열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
- 계열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계열사업 체계화
-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추진

3. 년차별 지원계획 (표 3)

표 3. 연차별 지원계획

| 구 분 | '96 까지 | '97~98 | '99~2004 | 합 계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
| 닭 | 16개소 | 4 | 3 | 23 |

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- 가. 사업내용설명
- 사업기간 : '97~'98
- 지원내용(표5)
- 대상축종 : 닭, 돼지

○ 가축계열사업 형태 : 완전계열화, 부분계열화, 조합형계열화

○ 자금지원계열화 : 농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 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

○ 자금지원방법

-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
-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.

-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돼지·닭경쟁력강화사업 또는 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, 계열농가가 이미 다른 축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가당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한도 범위내에서만 지원함.

-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내용과 융자조건에 의함.

○ 지원조건

- 지원액: 사업계획 기간내에 분할차등 지원

- 지원비율: 융자70%이내, 자담30%이상

- 상환조건: 5년거치 10년균분상환, 연리5~8%

※ 금리: 생산자단체 연리 5%, 기타 연리8%

나. '97 사업비(예산안) 내용 (표4)

표4 '97사업비 (예산안 내용) (단위:개소, 백만원)

| | 신규사업 | | 계속사업2년차 | | 기존사업 보완 | | 계 |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| 사업량 | 사업비 | 사업량 | 사업비 | 사업량 | 사업비 | 사업량 | 사업비 |
| 닭(육계) | 3 | 4,090 | 2 | 2,273 | 2 | 1,183 | 7 | 7,546 |

* 신규 및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업체별 지원액 별도 통보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: 시·도지자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

○ 시·도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
○ 시·군·자치구: 축산과 또는 농산과(축산계)

다. 사업시행

(1) 사업계획의 수립

○ 기준보완과 신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에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,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

○ 계열사업완성년도,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 두수, 연도별 시설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축발기금, 자부담구분)을 명시

○ 사업추진규모

- 닭(육계)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이상(종계40천수×100수), 농가확보: 25호이상

○ 사업추진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

- 닭(육계):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·공급 할 수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○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(고유브랜드)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.

○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

- 축산기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등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 2명이상을 확보 하여야 함.

○ 사업계획의 조정: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○ 사업목표달성을 여부점검

- 시설계획 및 사업목표 달성을 등 규정된 사항 이행 여부

- 계열농가 및 계열주체의 경영 지도

-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

- 생산비 및 유통마진 절감 추진

○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

- 확정된 사업계획대로 매년사업이 추진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차년도 예산지원에서 제외하고 기 지원자금은 회수할 수 있음

·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
- 사후관리는 '91년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여 자금상환이 만료되는 연도까지로

표5.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: 1.20일

| 구분 | 지원 범위 | 지원 조건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1. 생산기반시설 | • 종계장, 자돈 및 모돈 생산 시설, 종돈장, 부화장 시설 | -사업비의 70%이내 -연리 8%(축협 등 생산자단체 5% -5년 거치 10년균분 상환 | |
| 2. 계열주체 사육시설 | • 계열주체직영 비육돈·육계 사육시설 | " | 수출용 가축을 직접도축, 도계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 |
| 3. 계열농가 사육시설 | -축사 및 부대건물 -사육시설 | -사업비의 70%이내 -연리 5% -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|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지원내용 과 동일 |
| 4. 도계시설 | -도계장 및 부대건물 (오페수리처리시설포함) | -사업비의 70%이내 -연리 8%(축협 등 생산자단체 5% -5년 거치 10년균분 상환 | 수출용닭을(2.5 ~3.0kg)도계하여 수출하는 주체 에만 지원 |
| 5. 가공시설 (육가공공장등) | -가공장시설 및 부대건물 (오페수리처리시설포함) | " | |
| 6. 유통·판매 시설 | -유통·판매장 및 부대건물 -냉장·냉동·물류등 유통·판매시설 | " | 임대료는 제외 |
| 7. 사료제조시설 | | 자부담으로 추진 | |
| 8. 기타 | | " | |

한다.

-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 축산발전기금운영 규정, 농특화계용자 사후관리지침, 농림부사업 자금 관리 기본규정에 의한다.

·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, 대출금을 농림업이외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,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등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축협중앙회,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
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금을 받은 자에게 자원금액의 과다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된다.

나. 보고

○계열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(별지 제7호 서식 생략) 7.20. 1.20일

○계열농가 협의체 구성현황(별지 제8호 서식 생략)

5. '98년 사업신청 및 대상 자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

나. 신청절차 : 사업계획서 작성
→ 1월 31일까지 관할 시·군 →
시·도 → 축산기술연구소 →
시·도(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) → 예산신청

다. 대상자선정

(1) 신청자격

○축산법, 축협법 등 관련규정에
의거 허가·등록된 축산업, 부화
업, 종축업, 도축(도계)업, 육가공
업,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
축산업협동조합(지역, 업종) 및 중
앙회

-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
자기 사업장 건설대상 토지가 확
보(사전심사후, 예산신청전까지)
된자
- 기타

•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

어야 함(주민동의서 첨부)

•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, 운영자금에
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.

• 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(사업
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)이 있어
야 한다.

(2) 우선순위

○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
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
업비를 지원

- 완전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자

- 생산물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자

- 자부담을 많이 하고자 하는 자

- 조합 형태로 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

- 기타의 경우

(3) 신청절차

○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[별지 제1호서식(생략)]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 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한다.

○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사업예산 신청 1개월이전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

(4) 계열화사업자 지정

○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축산법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가축계열화 사업자로 지정한다.

○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.

라. 기타사항

○ 대상축종 : 돼지, 육계(산란계 신규는 제외됨)
○ '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,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가공판매시설 및 운영(공공) (계란가공시설)

- 농림부 축산물유통과

1. 목적

○ 계란을 가공하여 소비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 확대
- 상인중심으로 되어있는 계란유통을 가공품생산을 통한 경제기능 부여

2. 추진방향

○ 계란의 유통단계 축소 및 계란의 상품성제고를 위

해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확대

3. 연도별 지원계획(표6)

표6. 연차별 지원계획

| | 계 | '92~'95 | '96 | '97 예산안 | '98 | '99~2004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사업량 | 10개소 | 2 | 3 | 1 | 3 | |
| 계 | 백만원 | 24,596 | 3,295 | 8,672 | 4,056 | 3,000 |
| 사 보조 업 용자 비 지방비 자부담 | 16,191 | 5,300 | 5,952 | 2,839 | 2,100 | |
| | 8,405 | 3,568 | 2,720 | 1,217 | 900 | |

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(1) 지원배경

○ 계란은 가공소비형태가 단순하여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

○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낮아 생산물에 대한 소비확대 및 상품개발 소홀

(2) 사업개요

○ 사업내용

-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가공시설, 냉장(동)시설, 폐수, 발전시설 등

○ 지원대상

- 생산자단체, 산란계 계열업체, 계란가공업체, 농가 등

○ 지원규모 및 조건
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70%이내 융자
- 지원조건 : 5년거치 10년 상환, 연리 5%(계란가공업체 8%)

나. '97 사업비(예산) 내용

| 내 용 | 사업량 | 사업비 합계 | 사 업 비 | | |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예산안(축발기금) | 지방비 | 자부담 | |
| 계 | 개소 1 | 백만원 4,056 | 2,839 | - | 2,839 | - |
| | | | | | | 1,217 |

<추진체계>

- 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
- 나. 사업담당부서
- 농림부 : 축산물유통과(02)504-9436
- 시·도 : 축산과(농정과)
- 시·군 자치구 : 축산과(산업과)

다. 대상자 선정

(1)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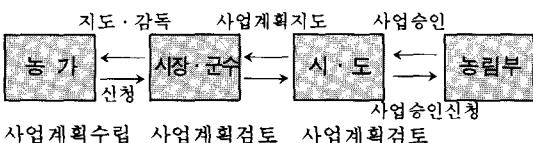
○ 사업대상자 선정시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

① 계란의 자가생산량이 많은 업체(농가 및 생산자단체)

② 판매망(판매계획)을 다수 확보한 업체(농가 및 생산자단체)

③ 계란(계란가공품)에 대해 자체브랜드를 등록(특허청)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브랜드 등록계획이 있는 업체(농가 및 생산자단체)

(2) 선정절차



라. 사업시행

○ 사업계획수립

-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을 해당 시·군의 지도하에 추진

- 사업기간 : 1~2년

○ 사후관리 : 시·도지사

○ 보고 : 사업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, 사업완료보고는 완료후 15일 이내

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(공공) (재래닭 고품질 육용화)

농림부 축산물 유통과

1. 목적

-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
-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전

2. 추진방향

-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
- 생산자단체,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기시화
- 연구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

3. 연도별 지원계획(표8)

표8. 연차별 지원계획

(단위:백만원)

| | 제 | '92~'95 | '96 | '97 | '98 | '99~2004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
| 사업량 | 4과제 | 4 | (계속) | (계속) | - | - |
| 사업비 | 792 | 329 | 260 | 203 | - | - |
| 보조 지부팀 | 792 | 329 | 260 | 203 | | |

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(1) 사업추진 배경

- 재래닭(토종닭)에 대한 소비증가
- 재래닭 사육 및 회망농가 증가
- 재래닭 소비자들도 의심과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소비

○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재래닭육용화 및 소득자원화방안 수립후 지원요청

(2) 사업추진 목표 및 활용방안

○ 재래닭의 외모적, 유전적, 면역학적, 생화학적 특성 구명

- 재래닭의 생산성 및 경제성 제고
-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, 외국닭과 교잡으로 종계 및 실용계의 생산능력 향상
-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재래닭 생산·유통체계 확립
- 재래닭에 대한 품질인증, 브랜드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

(3) 사업기간 : '94~'97

(4) 사업과제 및 추진기간

○ 재래닭의 생산능력 평가 및 품종기준 설정 : '94~'97

○ 우량교배조합 선발 : '95~'97

○ 실용계의 사양관례체계 확립 : '96~'97

○ 재래닭의 소비형태 조사 : '97

(5) 지원내용

○ 재래닭 육용화사업에 필요한 가축구입비, 시설비, 재료비, 인건비 등 지원

(6) 지원대상 및 조건

○ 지원대상 : (사)대한양계협회

○ 지원조건 : 축산발전기금 사업비(보조)

나. '97사업비(예산) 내용(표9)

표9. '97사업비(예산) 내용

(단위:백만원)

| 내용 | 사업량 | 사업비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| | 합계 | 축산발전기금 | | | 지방비 |
| | | | 소계 | 용자 | 보조 | |
| 기금사업비 | 6항목 | 203 | 203 | 203 | | |
| · 재래닭의 계통 육성및능력검정 · 교배종의 사양 관리기준 설정 · 실용계의 산육 및육질탁성구명 · 재래닭의 생 물의 소비형태 조사 | 1 1 3 1 | 89 34 40 40 | 89 34 40 40 | 89 34 40 40 | | |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

○ 사업시행기관 : 대한양계협회

○ 협조기관('94~'97) : 축산기술연구소, 수의과학 연구소, 서울대농대·가금학회 및 재래닭 보존연구회 등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(전화 02-504-9431~3)

○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(전화 수원 0331-292-4511, 성환 0417-581-2081)

○ 대한양계협회 전화 02-588-7651

다. 사업시행

(1) 사업계획수립

○ 대한양계협회장은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

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 승인요청

(2) 사업추진방법

○ 대한양계협회장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확정시 필요할 경우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담 추진

○ 시험축 확보는 국내연구기관,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확보

○ 시험기간 중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

(3) 사업비 지원방법

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분기별 자금신청에 의거 개산불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 개산불 지급시 전분기분은 정산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○ 대한양계협회장은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지도·감독

나. 보고(대한양계협회장→가축개량총괄기관장)

○ '97세부사업추진계획 : '97. 2월말까지

○ 사업추진실적 : 매분기 익월말까지

축산경영여전 개선(공공) 축산자조금

-농림부 축산경영과

1. 목적

○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홍보, 조사연구,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도모

2. 추진방향

○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등에 의한 축산물가격안정 유도

○ 축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

3. '97사업시행요령

표 10. 연차별 지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사업명 | 사업비(축발기금) | |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
| | | 합계 | 보조 | 자 부담 | |
| 자조금 지원사업 | 개소 | 2 | 600 | 200 | 400 |

<사업개요>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

나. 사업내용

○사업대상자

-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

○사업비지원

○지원조건 및 방법

- 연도별로 자조금 사업운영계획(안)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신청
- 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을 승인받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지 50범위내에서 보조금지급
- 축협중앙회장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을 확인하여 보조금교부 및 지급

<행정사항>

○보고

- 사업운영계획 : 1월말까지
- 사업추진실적보고 : 익년 1월말까지
- 자조금에 의한 행사추진계획서 : 수시보고

**축산경영여건개선(공공)
(가축박람회)**

- 농림부 축산경영과

1. 목적

○닭고기, 계란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

○국내외 양계관련 기자재 등의 비교전시를 통한 상호기술 및 정보교환

○양계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양계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

2. 기본방향

○ 생산자,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추진

○ 점진적으로 수입사업이 되도록 추진

3. '97사업 시행요령**<사업개요>**

○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

○사업시행기관 : (사)대한양계협회

○사업기관 : '97년중(격년제로 실시)

○사업내용

- 전시행사 : 기자재 및 시설전시, 양계사육시설, 닭 및 양계산물 등
- 홍보행사 : 양계산물, 전시판매 및 시식회, 소비 홍보 포스터 공보, 우수양계인선발대회, 글짓기대회 등
- 양계관련 세미나, 양계인대회 등

○지원내용 : 행정비의 일부보조

○지원금액 : 95백만원

<행정사항>

○사업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

○양계박람회 추진실적 보고(완료후 30일 이내)

○사업안내기관 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0-2689)

**종축등록 및 검정(공공)
(닭 경제능력검정)**

- 농림부 축산정책과

1. 목적

○ 종계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

○ 우량 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지 표 제공

○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

2 추진방향

○ 검증소 검정과 일반검증의 병행 추진

○ 검정방법의 공정화, 전문요원의 전문화,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

○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익 증진

표 11. 연차별 지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계 | '92~'95 | '96 | '97 (예산안) | '98 | '99~2004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사업량 | 438천수 | 60 | 42 | 42 | 42 | 252 |
| 사 계 | 72,611 | 1,414 | 194 | 303 | 100 | 600 |
| 보 조 자부담 | 72,611 | 1,414 | 194 | 303 | 100 | 600 |

3. 연도별 지원계획(표11)

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(1) 검정사업계획

○ 시·도지사에 종계장 등록을 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사업과 일반검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

○ 검정소 : 42천수(산란계 30, 육계 12)

○ 일반검정 :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.

(2) 지원내용

○ 검정사료비, 검정시설 및 장비 등 검정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

(3)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
○ 지원대상 : (사)대한양계협회 닭경제능력검정소

○ 지원조건 : 축발기금 보조

나. '97사업비(예산) 내용(표12)

표 12. '97사업비(예산)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| 내용별 | 사업량 | 사업비(백만원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
| | | 합 계 | 축산발전기금 | 지방비 | 자부담 |
| 소 계 | 보 조 | 용 지 | | | |
| 보조사업비계 | 42천수 | 671 | 303 | 303 | |
| · 검정사업비 · 보조 · 시설 개보수 | | 284 | 100 | 100 | |
| | | 387 | 203 | 203 | |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

○ 사업시행기관 : 대한양계협회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축산국 축산정책과(전화 02-504-9431~3)

○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(전화 0417-581-2081)

○ 대한양계협회(협회 02-588-7561, 검정소 0334-675-7139)

다. 사업시행

○ 사업계획수립

- 대한양계협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 승인요청

○ 종계검정방법

- 닭 검정요령(농림부 고시 제87-42호, '87.2.1)에 의하여 실시

○ 사업비 지원방법

- 검정사료비, 검정시설 및 장비 등 사업비지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보조금 지원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○ 검정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을 통하여 농장별 계종별 검정성적을 공표

나. 보고(대한양계협회장 → 가축개량총괄관장)

○ '97 닭경제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: '97. 2월 말까지

○ 사업추진 실적 : 매분기 익월말까지